예 산 총 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3,239,252	15,097,178
일반회계	475,600,520	14,268,016
특별회계	27,638,732	829,162
기타특별회계	27,638,732	829,162
지역발전특별회계	1,301,961	39,059
의료급여특별회계	151,016	4,530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5,020,850	150,62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69,062	17,072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26,628	12,7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35,569	124,067
수질개선특별회계	15,451,518	463,54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2,128	17,4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79,05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